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 31 기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근거하여 제 3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 년 3 월 26 일(목) 오전 10 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 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 31 기(2025.1.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 주 당 배당금 75 원)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 2 조)

제 2-2 호 의안: 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 (제 13 조)

제 2-3 호 의안: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제 24 조, 부칙 제 4 조)

제 2-4 호 의안: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 20 조, 부칙 제 2 조)

제 2-5 호 의안: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 23 조, 제 2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4 항, 부칙 제 3 조)

제 2-6 호 의안: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 27 조 제 7 항, 제 27 조 제 10 항, 부칙 제 5 조)

제 2-7 호 의안: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 (제 23 조 제 1 항)

제 2-8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 1 조)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 인, 사외이사 2 인)[첨부 2]

제 3-1 호 의안: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2 호 의안: 김영준 사외이사 선임의 건 (3 년)

제 3-3 호 의안: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함춘승, 3 년)[첨부 3]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영준, 3 년)[첨부 4]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 억원)

제 7 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 8 호 의안: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승인의 건

제 9 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 1)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2)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제 31 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에 관한 공고문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3)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4일 9시 ~ 2026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 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온라인 중계 관련

- 1)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님들을 위하여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 2)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https://www.kakaocorp.com/i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3)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혹은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주주총회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온라인 중계가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물 안내

1) 직접 행사: 본인 신분증

2) 대리 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인(주주)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위임장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A 동 3 층, 카카오 기업가치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2026 년 3 월 11 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정신아

명의개서대리인 KB 국민은행장 이환주

[첨부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37.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p>	<p>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7. <u>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업</u> 38. <u>기타 정보서비스업</u> 39. <u>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u> 40. 각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p>	<p>- AI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사업에 따른 목적 추가</p> <p>- 조항 번호 변경</p>

- AI 를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정의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정관상 사업목적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 사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타 정보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 2-2 호 의안: 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 (제 13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13 조 (기준일) (신설)</p>	<p>제 13 조 (기준일)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는 <u>이사회의 결의로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12 월 31 일로 하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p>

<p>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3.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 조항 번호 변경</p>
--	--	-------------------

- 상법에서 주주총회 기준일을 영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정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기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등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주총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 2-3 호 의안: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제 24 조, 부칙 제 4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4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제 19 조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신설)</p>	<p>제 24 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제 19 조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삭제)</p> <p><u>부 칙 (2026.03.26)</u> 제 4 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 24 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p> <p>- 경과 규정을 통한 법령과 정관 간의 적용 시점을 일치</p>

-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집중투표 배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정관의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제 2-4 호 의안: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 20 조, 부칙 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0 조 (표 결)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u>을 대리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신설)</p>	<p>제 20 조 (표 결)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대리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p> <p><u>부 칙 (2026.03.26)</u> 제 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20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상법 개정 사항 반영(제 368 조)</p> <p>- 경과 규정을 통한 법령과 정관 간의 적용 시점을 일치</p>

-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대리권 증명 수단으로 전자문서를 인정하도록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정관과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정관의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제 2-5 호 의안: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 23 조, 제 2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4 항, 부칙 제 3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p>제 23 조 (이사의 수)</p> <p>1. 당 회사의 이사는 삼(3)인 이상 십일(11)인 이하로 두고,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u>사외이사</u>로 선임한다.</p> <p>2.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한다.</p> <p>제 27 조 (감사위원회)</p> <p>3. 위원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p> <p>4.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한다.</p> <p>(부칙 신설)</p>	<p>제 23 조 (이사의 수)</p> <p>1. 당 회사의 이사는 삼(3)인 이상 십일(11)인 이하로 두고,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u>독립이사</u>로 선임한다.</p> <p>2.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한다.</p> <p>제 27 조 (감사위원회)</p> <p>3. 위원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p> <p>4.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한다.</p> <p>부 칙 (2026.03.26)</p> <p><u>제 3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23 조, 제 2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4 항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는 2026년 7월 22일까지 종전의 사외이사로 본다.</u></p>	<p>- 상법 개정 사항 반영(제 542 조의 8)</p> <p>- 상법 개정 사항 반영(제 542 조의 11)</p> <p>- 경과 규정을 통한 법령과 정관 간의 적용 시점을 일치</p>
--	---	---

-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과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정관의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법령과 정관 간 용어 및 적용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 2-6 호 의안: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 27 조 제 7 항, 제 27 조 제 10 항, 부칙 제 5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7 조 (감사위원회)</p> <p>7.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u>1명</u>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중략)</p> <p>10.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27 조 (감사위원회)</p> <p>7.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u>2명</u>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중략)</p> <p>10.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 상법 개정 사항 반영(제 542 조의 12)</p>

(부칙 신설) 부 칙 (2026.03.26) 제 5 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27 조 제 10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 규정을 통한 법령과 정관 간의 적용 시점을 일치
--	--	---------------------------------

- 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법령상 감사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과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상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정관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제 2-7 호 의안: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 (제 23 조 제 1 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3 조 (이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삼(3)인 이상 <u>십일(11)인</u> 이하로 두고, (생략)	제 23 조 (이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삼(3)인 이상 <u>칠인(7)인</u> 이하로 두고, (생략)	이사회 역할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모 조정

- 이사회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1) '핵심 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과 부합한 이사회 구성

카카오는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핵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역시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검토하던 과거의 역할에서 나아가, 핵심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은 기술과 경쟁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략의 완성도와 더불어 변화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하고 정예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최적 이사회 규모에 관한 판단

1)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수반한 이사회 구성 변경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근거해 적정 이사회 규모를 판단하였으며, 이는 카카오의 과거 10개년 평균 이사회 구성과 국내 주요 플랫폼·통신·AI 기반 기업의 이사회 현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사회 인원의 축소에도 독립이사의 비중은 67%까지 확대되며 이사회의 독립성은 과거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예화된 이사회 구성원들은 형식적인 보고 중심의 이사회 운영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국내외 테크 기업과 달리, 카카오는 2021년 선제적으로 두 직책을 분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 독립이사 주도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카카오는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AI와 기술 전문가를 독립이사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역량 구성표]

구분	정신아	신중환	함춘승	김선욱	차경진	김영준
법률/규제 정책			0	0	0	
기업 경영/투자	0	0	0	0	0	0
재무/회계		0	0			0
디지털/기술/보안	0				0	0
브랜드/커뮤니케이션	0		0			
리스크 관리/이해관계자 대응		0	0	0		
ESG			0		0	0
AI	0				0	0

참고 1. 제 31 기(FY 2025) 정기주주총회 이후 기준입니다.

2) 사전적 통제 장치로서의 규정 실효성 확보

정관상 이사회 인원 기준의 상한이 실제 이사회의 운영 규모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 이사회의 규모 확대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 장치로서의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형태가 회사의 중장기적 전략 방향과 지배구조 원칙에 근거해 결정되지 아니하고 단기적 판단에 의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이사회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규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적 통제 장치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 2-8 호 의안: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 1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부칙 신설)	부 칙 (2026.03.2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시행일 규정

- 정관 개정 사항 전반의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 정관의 효력 발생 시점을 2026 년 3 월 26 일로 명시함으로써, 정관 개정에 따른 혼선 없이 제도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 세부 조항별 경과 규정을 통해 법령과 정관 간의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첨부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 인, 사외이사 2 인)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추천인
정신아	1975.02.2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영준	1968.12.2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차경진	1983.09.1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정신아	(주)카카오 대표이사	<학력사항> 1997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경영학과 학사 200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 2006년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MBA <경력사항> 2000년 ~ 2007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2010년 ~ 2013년 네이버(주, 엔에이치엔(주)) 수석부장 2018년 ~ 2024년 (주)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2024년 ~ 현재 CA협의체 의장 2024년 ~ 현재 (주)카카오 대표이사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1994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6년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5년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2023년 <경력사항> 2008년 ~ 2012년 2014년 ~ 2015년 2015년 ~ 2023년 2020년 ~ 2020년 2012년 ~ 현재	하버드대학교 재무 석사 텍사스A&M국제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주임교수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UNIST) 산업공학과 조교수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전공교수, 한양대학교 비즈니스인포메틱스학과 학과장	<학력사항> 2006년 2011년 <경력사항> 2019년 ~ 현재 2021년 ~ 현재 2023년 ~ 현재 2023년 ~ 현재 2024년 ~ 현재 2024년 ~ 현재	태즈메니아주립대학교 정보시스템 학사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영정보시스템 박사 한양대학교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전공교수, 비즈니스인포메틱스학과 교수 한국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회 심의위원 경찰청 미래치안국 자문위원 (주)신세계아이앤씨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신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차경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함춘승, 3년)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추천인
함춘승	1964.01.16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학력사항> 1986년 <경력사항> 1986년 ~ 1989년 1989년 ~ 1993년 1993년 ~ 1998년 1999년 ~ 2000년 2004년 ~ 2013년 2022년 ~ 현재 2013년 ~ 현재	예일대학교 (경제정치학 학사) 씨티은행 뉴욕본사(International Private Banking) 슈로더증권 서울사무소 런던본사(리서치, 법인영업) LG증권 런던/홍콩현지법인 이사(트레이딩, 법인영업) 아이엔지 베어링증권(주) 서울지점 전무이사(주식총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주)루트로닉 리스크관리자(Chief Risk Officer) 피에이치앤컴퍼니(주) 사장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함춘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첨부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영준, 3년)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추천인
김영준	1968.12.25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1994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6년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5년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3년	하버드대학교 재무 석사
		<경력사항>	
		2008년 ~ 2012년	텍사스A&M국제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14년 ~ 2015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2015년 ~ 2023년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주임교수		
2020년 ~ 2020년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2012년 ~ 현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위임장

본인은 2026년 3월 26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서 _____ (을)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주주번호 : _____
- 2. 소유주식수 : _____ 주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 4.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 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31기(2025. 1. 1. ~ 2025. 12. 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75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조)	
		2-2 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제13조)	
		2-3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제24조, 부칙 제4조)	
		2-4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제20조, 부칙 제2조)	
		2-5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3조, 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 부칙 제3조)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7조 제7항, 제27조 제10항, 부칙 제5조)	
		2-7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제23조 제1항)	
		2-8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부칙 제1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3-1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2년)	
		3-2 김영준 사외이사 선임의 건(3년)	
		3-3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함춘승, 3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영준, 3년)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0억원)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8호 의안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6. 기타 사항(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등)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6년 월 일 시

※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으며, 위임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 유효합니다.